

국회 법사위 '낙태·간통죄 공청회' 중계

국회 법사위는 21일 법사위 회의실에서 정부가 제출한 형법개정안 중 논란을 빚고 있는 낙태죄 및 간통죄 존폐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다음은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 요지이다.

◇ 박삼봉 판사(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낙태허용범위를 형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특별법인 모자보건법에 존치시키는 현행 법체계보다 체계상 우월하다고 본다. 그러나 성범죄로 인한 낙태 허용기간(20주)은 대폭 줄여야 한다. 낙태허용에 관한 사유판단을 시술자가 아닌 제3의 유자격

범죄를 범죄로서 처벌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일본에서 지난 47년 간통죄를 폐지할 당시 간통죄는 여자만을 처벌하는 단벌주의였음에도 국민의 약 69%가 존속을 지지했다. 이런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결단을 내릴 때라고 생각한다.

◇ 황해진 변호사=모자보건법이 좀더 폭넓게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는 형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입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만큼 모자보건법에 벌칙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법의식을 고려할 때 간

간통죄의 경우 전면폐지보다는 가정을 파괴할 정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현실은 간통 처벌이 간통의 예방기능보다 간통 피해자의 보복심리 충족과 위자료 확보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에서 현행과 같은 존치는 문제가 있다.

◇ 송열섭 신부(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차장)=태아의 생명권은 자연법과 실정법뿐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권이다. 생명이 위독한 어머니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치료나 수술로 간접적으로 태아의 희생이

“간통죄 성급한 폐지는 금물”

처벌완화 바람직...낙태 허용기간등 제한을

의사가 하도록 하고 부정한 판단자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두어야 한다.

간통죄의 존폐는 결국 시기문제이나 찬반이 팽팽할 경우 현상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 김규현 검사(서울지검)=낙태허용기간을 기형아 등 우생학적인 경우 24주 이내, 성범죄나 혈족·인척간 임신 등 윤리적인 경우 20주 이내로 모자보건법(28주)보다 단축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간통은 존치론을 취하건 폐지론을 지지하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그러나 간

통죄의 성급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장치는 폐지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징역형의 형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하고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개정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다.

◇ 박상기 교수(연세대)=의학적인 이유로 인한 낙태 허용의 경우 임신기간의 제한없이 낙태가 허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의사나 종교단체 또는 사회봉사자 등과 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등 억제장치를 두고, 허용된 낙태는 의사가 의학협회 등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법낙태를 방지해야 한다.

따르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으나 이런 경우 새 규정 없이도 긴급피난조항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 광배회 상담위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현재 우리나라는 외형상 일부일처 혼인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일부다처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간통죄는 이 법이 만들어진 40여년전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향락산업의 번창과 성도덕의 부재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실정으로는 현재의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형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